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시가총액 4,083억원, 26위에 해당하는 대형 코스닥 상장 업체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상장 폐지 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2월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는 7,287명으로 전체 주주의 99.89%이고 마지막 거래일이던 3월 24일의 종가 8,500원으로 보면 2,570억원 가량의 개인투자자 돈이 사라진다.

분식 덩어리인 회사에 투자한 당사자들의 대가라고 하기엔, 이 회사의 외부 감사보고서나 재무제표 등을 통해 부실 징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데 이번 사태의 본질이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법인과 합병을 결의했고, 이 합병 건이 금감원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같은 해 10월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당시 시가총액은 약 6,600억원으로 코스닥시장 13위였다. 이 회사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 2009 차세대세계 일류상품'으로 선정됐고, 올해 2~4월에 대량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실적, 현금, 자본 등 재무제표에도 어떤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던 이 회사가 올해 3월 2009년 결산감사 때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우회상장 5개월 만에 상장폐지 기업으로 전락하게 됐다. 수정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가 제출될 때마다 실적은 매출액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5분의 1로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 돌변했다. 자본총계나 보유현금도 대폭 줄었다. 회사 측은 2009년도 매출액이 1,453억원에 당기순이익이 245억원

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매출액이 187억원에 불과하고 8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 대표이사는 지난 3월 주총에서 “10년째 계속 외부감사를 받아왔다. 어떻게 숫자가 틀릴 수 있겠는가”라고 항변할 정도로 당당했다.

상장폐지는 이미 결정됐지만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겠다는 입장이다. 낮은 우회상장 기준으로 상장을 허가한 한국거래소, 우회상장을 주선하거나 감사의견 ‘적정’을 냈던 회계법인, 유망 기업으로 소개한 언론사, 투자를 권유한 증권사 등에 대해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된 기업이 크게 늘었다. 올해만 상장폐지된 62개사 중 37%인 23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됐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해 상장폐지 된 기업은 2009년 27개사, 2008년 10개사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회계감독 강화와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으로 상장폐지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줄줄이 상폐되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이 1년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며 “회계법인들은 그동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눈을 감은 채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동일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냈다가 1년 후 ‘거절’을 낸 경우는 31차례나 됐다.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된 60개사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1년 전 실시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1년간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가 그만큼 급변했다는 반론을 제기 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회계법인은 1년 전 보고서에서 감사 의견 변형이나 특기사항 같은 지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살펴보자 한다.

매출채권 · 매출 과대(소) 계상

가. N사의 매출채권 허위계상

□ 지적사항

N사는 A/S 및 교육시설관련 임차보증금(○ ○ ○백만원)이 이미 회수되어 소멸하였으나 전기까지 실재하는 것처럼 허위계상하다가, 당기에 마치 동 임차보증금이 회수된 것처럼 표시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받은 받을어음과 대체(임차보증금→매출채권)하는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여 매출채권을 ○ ○ ○백만원 허위계상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회사가 A/S 및 교육시설관련 임차보증금을 계약서상 임차기간 만료시점에서 실제 회수하고 동 임대차와 관련된 사업부가 타업체에 이전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감사시에 계약연장 여부 등 실재성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고 동 임차보증금이 임차종료 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회사의 회수될 것이라는 허위 진술만 믿고 임차보증금의 실재성 및 권리변동에 대한 증빙 대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나. S사의 매출액 허위계상 등

□ 지적사항

S사는 제X3기 재무제표의 가결산 결과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기에 발생한 매출을 당기에 인식하여 매출채권 3,99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고, 제X4기에도 주력 제품의 사양화로 인하여 경영실적이 더욱 악화되자 발생사실이 없는 매출을 허위로 계상하여 매출채권 9,972백만원을 과대 계상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제X3기에 감사인은 매출채권 조회를 함에 있어서 회수율 등 감사일정의 편의를 위해 대차대조표일(3월말)이 아닌 1월말을 기준으로 조회서를 발송함으로써 과대 계상된 2,3월의 매출이 조회대상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고 제X4기에는 일부 매출채권 조회서를 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수하여 조회서의 감사증거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감사절차 없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음 또한, 매출의 CUT-OFF(기간귀속) TEST 감사절차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증거력이 높은 외부증빙(인수증)이 아닌 내부증빙(출고증)에 의존하여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회사의 허위매출 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다. T사의 매출 과대계상

□ 지적사항

T사는 해외거래처인 EURO에 대해 허위로 수출을 계상하여 발생한 가공의 매출채권 2,030백만원을 대표이사가 대신 상환하는 방법으로 X0년도 매출액을 2,030백만원만큼 허위 계상하고, 선하증권(B/L)을 운송알선업자로부터 미리 발급받는 방법으로 X2년도 수출을 X1년의 수출로 처리하여 매출액 5,436백만원을 과대계상하고, 선발행된 선하증권을 은행에서 D/A방식으로 할인하여 조달한 단기차입금 5,595백만원을 누락하였음 또한, D/A방식에 의한 수출채권 할인액 중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이 X0년말 현재 5,930백만원, X1년말 현재 5,941백만원에 달함에도 관련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는 X1년말 현재 D/A약정한도가 4.88백만불인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의 D/A약정한도(10.78백만불)와 할인잔액(8.70백만불)은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 우발채무성격의 D/A할인잔액은 X1년말 현재 총자산의 33%인 11,536백만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었으며, 감사인은 은행조회서 등을 통해 D/A할인규모를 알 수 있었음 허위의 매출계상 및 대표이사의 매출채권 상환은 모두 기중에 이루어져 기밀잔액이 전혀 없었으며, 매출계상 및 매출채권 회수에 대한 증빙을 조작하여 회사가 갖추고 있었으므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절차로는 적발이 곤란함

● 재고자산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가. N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 지적사항

N사는 타처보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없이 기중 거래기록만을 가지고 매출원가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미 판매된 상품 ○○○백만원을 매출원가에서 누락하여 동액만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재고자산을 보관·통제하고 있는 제3자에게 재고자산의 수량과 상태에 관해 직접 조회 확인하여야 함에도, 타처보관 재고자산에 대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조회 확인하지 아니하고, 회사를 통해 수령한 보관증의 확인만으로 감사절차를 갈음함

나. H사의 재고자산의 과대계상

□ 지적사항

H사는 X3년 원자재단가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회사 창고에서 출고된 후 선적지 콘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되어 수출대기중인 제품 중 일부 품목의 수량을 가공 계상함으로써 X3년 제품 4,000백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동액만큼 과소계상하여, X3년 자기자본을 4,000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회사의 제품수불부증 특정 2개 품목이 전기에 비해 수량과 금액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심층적인 분석적 검토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보세장치장의 콘테이너 야적장(CY)에 보관중인 회사의 재고현황을 보관 창고업자에게 직접 조회하지 않고, 회사를 통하여 조회서를 발송·회수하였는바, 회수된 조회서가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지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 따라서, 감사인은 제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적 검토절차, 조회확인절차 등의 감사절차를 소홀한 것임

다. T사의 재고자산 과대계상

□ 지적사항

T사는 재고자산 중 원·부자재는 재고수불부의 출고기록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공품은 작업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거래처에서 가공중인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제품은 불량품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박스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X5년, X6년 1분기 및 X6년 반기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입회 시 생산라인 내에 보관하고 있는 원·부자재(원·부자재의 31%)에 대하여 재고명세서를 제출받지 않고 실사입회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기말 감사시 제품이 전기대비 122% 증가하였으나 매출은 전기대비 46% 감소한 특이상황임에도 주력제품(기말제품의 46%)의 X6년 1월 중 판매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면서 회사 직원이 실제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불러준 매출액만을 신뢰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고정자산 과다 계상

가. H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 지적사항

H사는 건설중인자산(수입 기계장치)을 가공계상한 후 이를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하여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X1, X2, X3, X4 회계연도에 유형자산을 각각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가공계상하고, 동 기간중 가공계상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및 감액손실 등의 회계처리를 통하여 비용을 각각 ○○○억원, △△△억원, ×××억원, □□□억원 과대계상 하였음
H사는 또한 X5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전기 이전에 가공으로 계상하여온 유형고정자산 등 ○○○억원의 오류를 수정하면서 중대한 오류임을 인지하고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지 않고 유형자산감액손실 등으로 허위기재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건설중인 자산의 취득·대체금액을 감사하면서 3,500건 이상의 거래명세서중 건당 50억 원 이상의 16건에 대하여만 관련증빙을 확인함으로써, 취득·대체관련 증빙이 전혀 없는 20억원 미만의 모든 가공거래가 표본선정에서 누락되어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적발하지 못하였으며, 전기오류 수정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함

나. N사의 유형자산 과대계상

□ 지적사항

N사는 특정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대금 영수증 등을 제공받아 회계처리 함으로써, X0회계연도부터 X3회계연도까지 4년 동안 각각 7억원, 8억원, 13억 원, 10억원의 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발견되고 부외부채가 발견되는 등 회사의 통제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에도, 담당자에 대한 질문, 문서개관 등의 유형자산의 실재성을 검증하기에 적절치 않은 절차를 취하고, 취득증빙테스트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

② 부채 누락

가. B사의 차입금 누락

□ 지적사항

B사는 X1년 중에 회사 최대주주(대표이사)가 횡령한 회사자금과 주주에게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자금을 결산기말까지 마치 현금이 실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기말감사 시 부족한 현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6,500백만원을 차입하여 다시 예금으로 불입한 것처럼 허위회계처리를 함으로써 X1년말 현재 차입금 6,500백만원, 단기대여금 6,500백만원(대손충당금 6,500백만원)을 누락하여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각각 6,500백만원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회사의 단기금융상품 등이 회사의 영업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거액인 점을 감안하여 기말시점 전후의 회계처리 내역이나 현금출납장의 거래내역 확인, 예금통장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나, 은행조회서만을 확인하여 6,500백만원의 부외부채를 발견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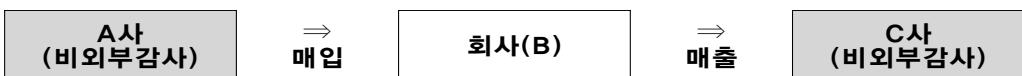
③ 매출 · 매입 과대(소) 계상

가. B사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지적사항

B사는 매출액 30억원의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명목상으로 회사가 중간에 개입하여 제품매출과 외주제작비가 발생된 것처럼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A사가 완제품(LCD모니터)을 제작하여 C사에 직접 배송한 거래를 회사가 제품매출로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회사는 동 매출 과정에서 재고를 보유한 적이 없고, 하자 및 지연납기로 인한 지체배상 및 제3자에 대한 제조물책임 등을 모두 매입처인 A사가 부담)

[허위계상된 매출 · 입거래 흐름]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대사 및 기간귀속 테스트, 채권조회서 징구 등의 필수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특정회사에 대한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57.5%에 이르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동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추가적인 감사절차(거래의 성격 및 실질화된 절차)를 소홀히 함

나. P사의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 계상

□ 지적사항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P사는 X2년 특수관계자인 S사로부터 주문을 받고 납품 전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계상하였으나 수입처의 재고부족으로 이에 대한 납품이 불가능하게 되자, P사의 회계부장은 목표매출액 달성을 위해 S사의 회계부장과 협의하여 S사로 하여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여 매입으로 계상함으로써, X2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71억원(매출액의 8.86%) 과대 계상 하였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매출에 대한 분석적 검토결과 3월 및 6월의 매출액이 비경상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내부통제평가 결과 재고자산 관리에 대한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가율 분석 및 기간귀속 검토만을 수행하고 원가율 증가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매입거래의 발생사실 확인에 대한 감사절차 및 특수관계자와의 매입거래에 대한 감사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음

X2년 S사로부터의 매입액이 전기대비 50% 증가한 반면, X2년초 S사 대리점을 폐쇄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검토를 소홀히 함

다. T사의 가공거래를 통한 매출매입 과대 계상

□ 지적사항

T사는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의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 코스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가 예상되

자 최대주주 등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및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함

□ 감사인의 감사절차

감사인은 대부분의 매출이 연말에 발생된 점 등을 이유로 가공매출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취하였음

- 재고 및 재고의 이동경로 확인을 위하여 매출처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조회의 Coverage를 잔액의 96%로 대폭 상향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Subsequent Test(통장 등을 통한 결산일 이후 매출 · 매입대금 회수 · 지급 확인)의 범위를 확대 실시

위와 같은 감사절차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와 회사가 조직적으로 가공매매 사실을 은폐하여 감사인이 당해 위반사실을 알기가 어려워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적 제외

◎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미기재

가. M사의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 지적사항

M사는 X7년말 현재 T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2,000백만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동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X8년 1분기말 현재 S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2,000백만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동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감사절차

회사가 X7년말 현재 T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 2,000백만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감사인은 감사종료 시까지 동 저축은행에 대한 조회서를 미회수하여 대체적인 절차(은행연합회 자료 확인, 경여자확인서 징구)로 감사를 종결함에 따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독립성 위반

가. 감사인(J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등

▣ 지적사항

J회계법인은 H사의 제XX기 및 제XX+1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동 법인의 사원인 A가 X9.10월부터 X6.6월까지 H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어 외감법 제3조제3항 및 회계감사기준 200.4. 등의 독립성 규정 위반으로 동 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담당이사인 B는 H사에 대한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 시 외감법 및 회계감사기준 상의 독립성 위배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H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감사의견(적정의견)을 표명하였음 또한, H사의 제XX기 외부감사가 S회계법인에 의하여 실시되었음에도, 제XX+1기 감사보고서에 전기(제XX기)의 감사를 J회계법인이 실시한 것으로 기재(양 회계연도의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등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나. 감사인(H회계법인)의 독립성 위반

▣ 지적사항

H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코스닥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이상의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이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P로 하여금 R사 및 S사의 연속하는 5개 회계연도(X2년~X6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행하게 하여서 독립성이 상실되었음에도 동 2개사의 2005 및 2006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적정)을 표명한 사실이 있음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투자자, 채권자, 정부 등 불특정 다수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리하여 경영자가 제시하는 재무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수준을 부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익적인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윤리기준 준수와 회계감사의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하지만, 정부당국의 철저한 감시·감독과 아울러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경제적인 환경도 충분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